

국가교육위원회 의 결

안 건 번 호 제2025-04호
안 건 명 「학교보건법 시행령」 등에 관한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통보(안)
의결연월일 2025. 7. 18.

주 문

「학교보건법 시행령」 등에 관한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통보(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5년 7월 18일

위원장	이배용
상임위원	김태준
상임위원	정대화
위원	강혜련
위원	김건
위원	손덕제
위원	양오봉
위원	연취현
위원	유민봉
위원	윤건영
위원	이민지
위원	이승재
위원	장석웅
위원	장신호
위원	전은영
위원	강은희

<별지>

「학교보건법 시행령」 등에 관한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통보(안)

□ 「학교보건법 시행령」

- 교육내용 설정(안 제22조의4제1항)의 경우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시기는 학교교육계획의 안정적 수립을 위해 ‘매 학년도 시작 전’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로 수정* 필요

* [수정안]제22조의4제1항: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매 ~~학년도~~ 시작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실시 횟수(안 제10조의3제1항)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협의체와 의견 동일
- 실시 방법(안 제10조의3제2항)의 경우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탄력적 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수정* 필요

* [수정안]제10조의3제2항: 제1항에 따른 마약중독예방교육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의견】

- 국가·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증가가 학교의 전문성, 자율성 등에 기반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있으며, 법정 의무 교육 관련 교육과정, 지원 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제도적 개선 검토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